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	
	 금융감독원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	<b>담 당 자</b>	김명지 사무관(02-2100-2865)
	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박 민 우(02-2100-2950)		윤현철 사무관(02-2100-2951)
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 동 환(02-2100-2960)		이정찬 사무관(02-2100-2972)
	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홍 길(02-3145-8300)		윤덕진 부국장(02-3145-8001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김옥배 팀장(02-3145-8022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강 한 구(02-3145-7460)		박지선 부국장(02-3145-7450)

## 제목 :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

### 1 추진배경

- 최근 집중호우가 서울·경기, 충청, 강원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함에 따라 재산·인명 피해가 발생
  - \* 8.3일 10시 30분 기준, 이재민 486가구(818명) 사망 6명, 실종 8명, 부상 6명  
사유시설 3,025건, 공공시설 385건 피해
  - 특히, 저지대 주택, 공장 및 시설물 등에서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태풍(제4호, '하구핏')의 영향으로 호우 지속 우려도 존재
- 재산 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적극 시행 추진

### 2 금융지원방안

#### ① 보험금·보험료 관련 지원

-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,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
  - (보험금)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%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

- (보험료)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,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
- (기타)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(신청 24시간 이내)

## 2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(산·기은, 신보, 농신보 및 시중은행)

- 정책금융기관\*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(최대 1년)
  - \* 산은, 기은, 신보, 농신보
-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(예: 6개월) 상환 유예(또는 분할상환) 및 만기 연장 유도

## 3 특례보증

-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\*를 발급받거나, 정부·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
  - \*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, 군수, 구청장 등 발급
- (신보)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\*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
  - \* 보증비율 85%→90%, 고정 보증료율 0.5%, 운전·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
- (농신보)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\*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·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
  - \* 보증비율 100%(전액보증), 간이신용조사(일부항목만 확인) 적용, 3억원 한도

## 3 지원체계 구축

- 금융감독원 「금융상담센터(☎1332)」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
- 특히,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\*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
  - \* 협회상담센터 방문 / 전화상담(손보협회 ☎ 02-3702-8500, 생보협회 ☎ 02-2262-6600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  
할 경우 출처를 표기  
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